

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40일 (20일 추가 연장가능)
신청인	업체명			법인등록번호	
	주 소			대표자 성명	
	실 무 담당자	성명	부서	직위	
	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 주소	
신청대상 물류창고	건축물명			착공 예정일	
	소재지			준공 예정일	
	연면적			용도	
인증받은 실적					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1부 2.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·보관·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3. 설계 변경 확인서 1부(물류센터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) 4.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5.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1부 6. 품질·안전·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(보유한 경우만 첨부합니다) 7.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8.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9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수수료 3백만원
------	--	-----------------

주의사항

1.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. 다만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합니다.
2.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·용기·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.
3. 예비인증 받은 자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의5제4항 단서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